

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3. 2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조정과 그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하향 조정 (안 별표)
-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(안 제9조제1항)
-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개선 (안 제17조제1항)
-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(안 제18조제1항제3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총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